

[붙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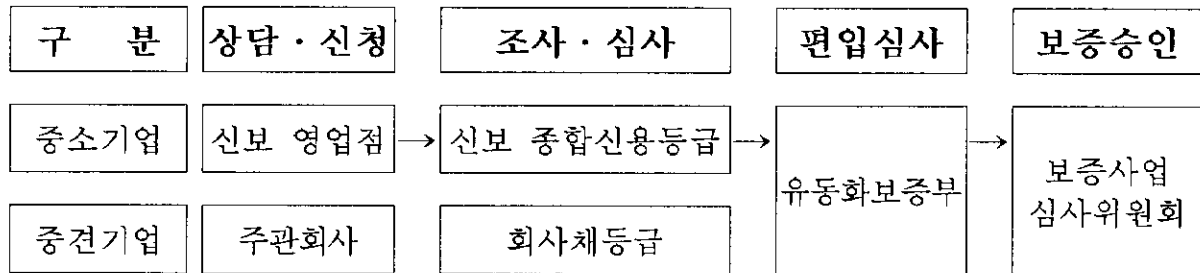
2012년 제5차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이용안내

- **주관기관 : 신용보증기금**
- **신청접수처 : 신용보증기금 각지점**
- **발행일정**

- '12. 9. 26(수) ~ 10. 5(금) : 신용보증기금 접수기간
- '12. 10. 18(목) : Pooling 확정
- '12. 10. 25(목) : 보증승인(보증사업심사위원회)
- '12. 11. 01(목) : 기초자산(회사채) 발행
- '12. 11. 02(금) : 건설사P-CBO 발행

※상기 발행일정은 업무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□ **신청절차**
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문의 바람.

□ **지원대상**

중 소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CPA감사보고서 有 : 신보 종합신용등급 K10이상 ■ CPA감사보고서 無 : 신보 종합신용등급 K9이상
중 견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-이상

□ **지원한도**

회사채 신용등급 및 신용보증기금 자체등급에 따라,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 책정

*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편입 제한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주력기업이 심사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보증금지·보증제한기업 및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
- 당기 CPA 감사의견이 “부적정” 또는 “의견거절”인 기업
- BB⁺(K6)등급 이하 기업으로 2년 연속 EBITDA이자보상배율 1.0미만인 기업
-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(건설업은 450%)
-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기업가치가 “0”이하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은행연합회 건설업 상시평가 운영지침에 의해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“C”, “D”등급 기업

□ 매출액·자기자본·차입금 및 사채발행 한도

구 분	편입한도
매출액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조업,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3이내 또는 최근 4개월간 매출액 이내 ■ 기타업종 :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/4이내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이내
자기자본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사채등급 BB(K7)등급 이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
차입금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이내

*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 + 보증재단보증 + 편입금액 +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

□ 발행조건

- 만기 : 3년
- 발행금리 : 중소기업 4%(K1등급) ~ 5.8%(K10등급) 수준
중견기업 5%(BBB⁺등급 이상) ~ 6%(BB⁻등급) 수준
- *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시가평가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후순위채 인수 : 건설사는 편입금액의 5%
비건설사는 편입금액의 3% 수준 인수